

부정수급 고지 확인서

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▣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(사례)

- 1)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신고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여 수급을 인정받은 경우
- 2)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취업(기타 일용·아르바이트, 임시근로 등 명칭 불문) 등 근로사실 미신고 및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
- 3)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
- 4) 보험설계사 등록(위촉), 골프장 캐디, 학습지 교사, 사업자 등록, 기타 자영업 활동 등을 미신고
- 5) 취업(취직)이 확정된 사실의 미신고
- 6)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,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※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한 후 급여 및 보수(대가)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

▣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와 처벌

- 1) 실업급여의 지급중지(고용보험법 제61조)
- 2) 실업급여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(같은법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105조)
- 3) 형사처벌(같은법 제116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, 공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

※ 모든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및 행정처분 후 검찰로 송치

위와 같이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고 이해하였으며, 추후 고지 받은 대로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(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, 형사처벌 등)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.

2023년 월 일
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재취업을 위한 약속

1. **실업인정일** 약속된 실업인정일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키겠습니다.

- ▶ 소정급여일수 동안 수급자마다 실업인정일 차수는 다릅니다.
- ▶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가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하였는지,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는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.
- ▶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, 나머지 실업인정 차수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,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출석형 실업인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중요한 실업인정일 차수	특이사항
- 1차 실업인정일(수급자격 신청 후 2주)	수급자격증 배포, 실업인정 집체교육
- 4차 실업인정일(수급자격 신청 후 통상 14주)	센터 방문 필수, 취업상담 등 진행

 위 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? 확인함

2. **재취업활동** 매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(1주~4주) 동안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- ▶ 실업인정 차수별로 수급자에게 부여된 재취업활동 의무가 다릅니다.
- ▶ 2차~4차 인정일에는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▶ 5차부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, 이 중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- ▶ 특히,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만료일까지 구직활동만 인정되며(4차부터 4주 2회),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1주 1회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합니다.
- ▶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대상이 되며, 면접 불참·취업거부 등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구직급여는 부지급 합니다.

 위 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? 확인함

3. **취업지원** 고용센터 내, 대외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- ▶ 특히 4차 실업인정일, 장기수급자의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을 비롯해 담당자가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출석하여 담당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지시(프로그램 참여·알선·훈련 등)를 하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

 위 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? 확인함

 위 항목을 모두 확인하셨습니까? 확인함

2023년 월 일

수급자격자 성명: (서명 또는 날인)

재취업활동 방법과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"취업희망카드"를 참고하세요.